

면허세 해설

김 성 점

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I. 서 론

2000년도는 면허세에 있어 큰 획을 그은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면허세 과세대상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신규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명칭이 변경된 사항, 그리고 폐지해야 할 사항들을 일체조사하여 현행 관련법령에 맞게 일체정비를 하였기 때문이다.

면허세는 1950년 국세로 신설되었다가 1954년 지방세로 이양된 후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것을 1973년 4월 1일부터는 신고의 수리와 검열·심사 등의 행정행위로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도의 경우 도세,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구세로서 1999년도 기준 2,374억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총액 대비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을 2000년도에는 그동안 종별구분에서 미비하였던 기준을 대폭 손질하였고 자경농민의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과 1년이상 휴업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면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등록분 면허세를 폐지(감소추정액 2,115억원, 면허세 세액의 85%이상 차지)함으로써 면허세 세액 점유율이 지방세 총액 대비